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8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박홍배·박용갑·박 정

이용우 • 박해철 • 김태선

이수진 · 김남근 · 서미화

강준현 · 맹성규 · 김한규

박정현 · 조승래 · 김정호

박지원 · 김우영 · 백승아

정태호 · 서영석 · 김영환

한민수 · 이정헌 · 민병덕

전용기 · 신영대 · 정준호

김태년 의원(2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이 2019년 186.0일에서 2023년 214.5로 증가함. 이로 인해 업무상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들은 산재 승인 여부 확인까지 약 7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간의 대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동안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부 노동자들은 치료비 부담이나 생계 유지를 위해 개인 적금을 해지하거나 생계비 대출을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고 통을 겪고 있으므로 산재 신청 노동자들의 신속한 치료와 보상을 위 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재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일정기간 도래한 경우 산재보상보험제도를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를 우선 보장함으로써 산재 노동자들이 긴 기다림의 고통 대신 치료와 재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산재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률 제 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해근로자의"를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시키고,"로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다만, 우선 지급 보험 급여의 종류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에 따른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6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공단은 이를 도와야한다.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 제1조(목적) ------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 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 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 -----충분하고 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재해근로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의 건강과 직무능력을 회복 보험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 재 시키고,-----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 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42조의2(산업재해보상보험의 우선 지급) ① 공단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결정에 걸리 는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에는 청구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의 급여를 우선 지급한다. 다 만, 우선 지급 보험급여의 종류 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6조 까지에 따른 보험급여로 한정 한다.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우선 지급 및 환수 절 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③ 그 밖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우선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 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4 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 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는 「의료법」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할 수 있다.
 - ⑥ 제5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 관은 신고가 접수된 즉시 공단 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 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험급여의 청구 등 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공 단은 이를 도와야한다. 조력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